심사보고서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호
심사일자	2026. 10. 15.

위원장 전 정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 (우편번호 05584) / Tel : (02)2147-3600 / Fax : (02)2147-395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

2026년 10월 15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 10. 2. 김안나, 이원우, 유미현, 정성일 의원

나. 회부일자: 2026. 10. 7.

다. 상정일자: 2026. 10. 15. 제335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김안나 의원)

가. 제안이유

○ 「디지털포용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으로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법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관련 규정에 디지털포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안 제1조, 제2조 및 제4조)

○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12조, 제15조 및 제17조)

○ 정보화교육 수강료 감면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8조)

○ 그 밖에 관련 규정과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 표현을 정비함 (안 제6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 및 제20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 부서협의 : 관계 부서와 협의 완료(첨단도시과)

○ 기　　타 :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 별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손지훈)

○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김안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원우, 유미현, 정성일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7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포용법」이 제정·시행(2025.1.21.제정, 2026.1.22.시행)됨에 따라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규정하던 일부 조항이 삭제·정비되고, 정보격차 해소교육에 관한 규정이 개편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종전 법률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디지털포용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이용 보장과 디지털역량 함양 등의 내용을 현행 조례의 정보격차 해소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음.

○ **주요 내용**

- **안 제1조, 제2조 및 제4조**는 조례의 목적 및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에 「디지털포용법」을 반영하고,

- **안 제12조제2항제2호**는 정보격차 해소 지원 대상의 기준을 상위 법령에 연계함으로써 지원 대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 **안 제18조**는 정보화교육 수강료 감면 대상에 관한 인용 법령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에서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포용법」 제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교육 관련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현행화하려는 내용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고 구민의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 보고**드림.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조용근 위원

○ 현행 조례 제18조제2항제4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수강료 감면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답변】 민정민 첨단도시과장

○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여 수강료를 감면받는 사례가 많으며, 제4호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받은 사례는 없음.

5. 심사결과: **원안가결**